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지정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81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지정	2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1.

3. 회부연월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에게 내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의 특성 상 법원의 판단으로 학교폭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고, 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통하여 학교폭력 결정의 효력을 지운 상태로 시간을 끌다가 가해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학생 등이 소송을 통해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지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행정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7조의4(학교폭력에 대한 전담재판부)</u> 행정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u>제17조의4(집행정지)</u> (생략)	<u>제17조의5(집행정지)</u> (현행 제17조의4와 같음)
<u>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u> (생략)	<u>제17조의6(재판기간에 관한 규정)</u> (현행 제17조의5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에는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고, 제1심은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재판기간에 관한 동 규정은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소송을 신속히 진행할수록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해학생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자는 차원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대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매우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다른 사건들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건만 법원이 선고를 신속하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8조²⁾가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2025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212개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본안 사건에 대한 전문성·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다만, 학교폭력 행정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심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한정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 외 지역에서 행정사건의 1심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개정안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에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지만, 그 외 학교폭력 행정사건의 1심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지 않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³⁾.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2조(전담재판부의 지정) ① 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법원 형사합의부 또는 형사단독판사를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

문 의 처
02)6788-5187

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부 칙 <법률 제4765호, 1994.7.27.>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 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법원행정처는 추가 의견으로 행정재판부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서울행정법원과 달리, 행정사건의 1심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는 행정재판부 수가 적으므로, 그 중 일부를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더라도 그 지정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참고 1

법원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및 법관 현황(2025. 3. 기준)

법원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합의(항소)		단독	
	재판부 수(개)	법관 수(명)	재판부 수(개)	법관 수(명)
서울고등법원	7	21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6	18	4	4
서울동부지방법원	4	12	3	3
서울남부지방법원	8	24	3	3
서울북부지방법원	4	12	2	2
서울서부지방법원	3	9	2	2
의정부지방법원	4	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	0	3	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0	0	0	0
인천지방법원	7	21	5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6	2	2
수원고등법원	3	9	0	0
수원지방법원	7	2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	0	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	4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	3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6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0	0	2	2
춘천지방법원	2	6	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0	0	3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0	0	0	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	3	1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	3	1	1
대전고등법원	0	0	0	0
대전지방법원	5	15	3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	3	1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	3	1	1

법원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합의(항소)		단독	
	재판부 수(개)	법관 수(명)	재판부 수(개)	법관 수(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	3	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3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3	1	1
청주지방법원	4	6	3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3	0	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	3	1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	3	1	1
대구고등법원	2	6		
대구지방법원	4	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0	0	2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0	0	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	3	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0	0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	4	1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0	0	0	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0	0	0	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0	0	0	0
부산고등법원	0	0	0	0
부산지방법원	5	15	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0	0	5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0	0	0	0
울산지방법원	2	6	2	2
창원지방법원	4	12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	3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	4	1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0	0	0	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0	0	0	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	3	0	0
광주고등법원	2	6	0	0
광주지방법원	4	12	4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	3	0	0

법원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합의(항소)		단독	
	재판부 수(개)	법관 수(명)	재판부 수(개)	법관 수(명)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0	0	0	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0	0	2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	3	1	1
전주지방법원	2	6	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0	0	0	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	3	1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	3	1	1
제주지방법원	1	3	2	2
총계	115	342	97	97